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 정혜영 의원

제출일 : 2024. 03. 08.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08.16.) 및 시행(2024.02.1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 규정(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의회에 알리는 것과 관련한 사항(안 제3조제2항)

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 신설(안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4.02.17.)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 요건 및 참여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규정하여 강화하고, 청구권자 수를 의회에 알리는 것을 즉시 하도록 하여 주민조례 발안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의 수리 기간의 경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법 제12조제2항제1호)와 이의신청에 대해 열람·결정등 절차 이행 후(법 제12조제2항제2호) 각각 3개월 이내 수리·각하 하도록 명시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을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하남시”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을 “그 사실을 지체 없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하남시와”를 “시와”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생략)
② 의장은 하남시와 각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신설>

제12조 (생략)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와 -----

-----.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